

산업현장에 꼭 맞는 안전기준으로 합리화하다

-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
-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(12.27.~2.7.)

붙임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

1. 시행령

□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(안 제78조)

-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기계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

□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 합리화(안 별표 24, 25)

-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에 산안법상 안전관리·안전진단 포함

□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기준(측정대상 사업장 수) 명확화(안 별표 29)

- 측정대상 사업장 수의 '반기' 기준(현행 행정해석)을 시행령에 명시

□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(안 별표 30)

-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(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명)과 합산하여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

2. 시행규칙

□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(안 제203조)

- 배치전건강진단의 면제 기준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'12개월'(석면, 야간작업 등) 및 '24개월'(소음, 분진 등)인 유해인자를 '12개월'로 변경

□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개선(안 별표 24)

-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는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검사하도록 규정

-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

□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(안 제200조)

- 타 법령의 유사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인정, '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'에 따른 건강진단도 인정대상에 추가

□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(안 제209조 및 제211조)

- 현행 한도가 없는 배치전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특수건강진단(직업환경전문의 1명당 연간 1만명)과 합산하여 연간 1만3천명으로 한정
-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보고 대상 건강진단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

□ 안전검사 검사원의 성능검사 교육 대상 기계 확대(안 별표 5)

-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 추가(시행령 개정)와 병행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* 대상 기계에도 동시에 추가

*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보유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부의 인정을 받아 실시할 경우 안전검사 실시를 인정

- 이에, 사업주의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 중 '검사원 성능검사교육을 받은 경우'에 혼합기,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교육을 추가

□ 제조등금지물질 제조·수입·사용 승인신청 시 항목 변경(안 별지 제70호)

- 산안법상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에 제품명, 화학물질 식별번호(Cas No.), 금지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량 기재로 변경

□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 규정 합리화(안 제109조 및 제125조)

- 타 법령에 따라 승인·신고·검사를 마친 경우 산안법상 안전인증·검사를 면제하고 있어, 타 법령 개정*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

* 舊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이 「전기사업법」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으로 분리 등

□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(안 별지 제91호)

-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 의무화

3. 안전보건규칙

□ 분쇄기 등 작업 시 방호조치 현행화(안 제87조)

- 위험부위에 설치한 덮개를 개방하고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,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설치 의무 부여

□ 볼 리프트의 방호조치 기준 마련(안 제130조)

-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비상정지장치 설치,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, ②센서 등 감응형(感應形) 방호장치,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(안전보건규칙안 제261조)

- 안전밸브 현황, 국·내외 사례,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2~4년으로 합리화

□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(안 제42조)

- 작업발판·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제한적으로, 높이 3.5m 이하 장소 등에서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모·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한 사용기준 신설

□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합리화(안 제517조)

-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기준(85dB)으로 상향 및 소음작업을 하는 장소로 개정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규정

□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(안 제619조의2)

- 전문자격, 공단교육 이수자 등 외에도 실질적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

□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(안 제24조)

- 장비를 등에 메고 이동하는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, 안전대 고정·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으로 예외 인정

□ **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(안 제32조, 제86조, 제672조, 제673조)**

-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이륜차와 자전거를 구분하여 이동수단에 적합한 안전모 착용토록 규정

□ **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(안 제55조)**

- 국내 산업현장의 달비계 작업 시 사용하지 않는 '와이어로프' 기준 삭제

□ **통나무 비계 기준 삭제(안 제71조)**

-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'통나무비계' 기준 삭제

□ **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(안 제92조)**

-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'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'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'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'로 규정

□ **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석 이탈시 안전조치 명확화(안 제99조)**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차량 '움직임'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명확화

* (現) 갑작스러운 '주행이나 이탈' → (改) 갑작스러운 '주행이나 움직임'

□ **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(안 제150조)**

-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도록 규정

□ **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(안 제184조)**

-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 안전띠,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

□ **아세틸렌 등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명확화(안 제290조·제295조)**

-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의 소화설비 기준* 명확화

□ **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·사용 작업 기준 삭제(안 제477조~제486조)**

- '석면'은 '16.2월 '허가대상 유해물질'에서 제조·사용·수입이 금지되는 '금지유해물질'로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제조·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

□ **진동 기계·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**(안 제519조, 제520조)

- 단순한 진동 기계·기구의 사용설명서 비치에서 적절한 사용방법 주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기준으로 개선

□ **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**(안 제547조)

-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여 배치기준 명확화